

결정서

사건 : 2015-194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REDACTED] 고등학교 직위 교사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심사일 : 2015. 5. 27(출석), 2015. 6. 24(서면)

결정일 : 2015. 6. 24.

피청구인이 2015. 2. 24. 청구인에게 한 전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5. 3. 24.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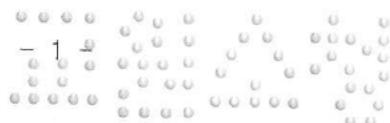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사유

청구인은 2015. 3. 1.자로 [REDACTED] 여자중학교에서 [REDACTED]
[REDACTED] 고등학교로 전보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전보처분에 관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미이행

1) 전보처분과 관련한 안건은 [REDACTED]여중의 교원인사위원회에 상정된 바 없고, 오히려 2015. 2. 16.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1학년 5반 담임업무, 1학년 국어수업 업무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REDACTED]여중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2. 26. 청구인에 대한 전보를 사후 승인하였으나, 사전심의를 하지 않은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에 대한 전보처분은 전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함

다른 학교로 전보발령 받게 되는 교원에게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 및 교재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불과 5일 전에 27년간 중학교에서만 국어수업을 담당해왔던 청구인에게 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을 하라는 전보처분을 하였는바, 이러한 전보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다. 「중등학교 교원 신규 임용 및 전보에 관한 규정」 위반

피청구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2조에 의거 제정된 「중등학교 교원 신규 임용 및 전보에 관한 규정」의 제15조(전보대상자 선정)에 의하면, 각 학교장은 매 학년도 시작 2개월 전에 소속 학교의 전보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나, 동국대부속여중 교장은 새학기 시작 2개월 전인 2015. 1월까지 청구인을 전보대상자로 하는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처분임

1) 전보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이긴 하나, 이로 인한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전보처분 당시 [REDACTED]여중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업무분장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고 [REDACTED]여중의 국어교사 수를 감축한 것도 아니었

는바 청구인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은 전혀 없었으며, 이는 27년간 중학교 국어를 담당했던 청구인을 갑자기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발령해야만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마. 전보처분을 위한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미이행

1) 청구인은 오랫동안 서울 용산구에서 거주하여 왔고, 남편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면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평소 40kg정도의 몸무게로 체력이 약한데다가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여 왔는데, 특히 지난 겨울방학 내내 과로한 나머지 ‘주관절 우측 외상파염’ 진단을 받아 복약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2) 청구인이 전보발령 받은 동국대부속영석고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하여 왕복 최소 4시간이라는 출·퇴근시간이 소요되며, 출·퇴근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고 싶어도 유류비 부담으로 엄두도 낼 수 없는데다가 발령받은 학교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는 것 또한 경제적으로 불가능한바, 전보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은 청구인이 감수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보처분에 대한 의향을 물어본다거나 형편을 살펴보거나 하지도 않았다.

3. 판 단

가. 사실관계

- 1) 청구인은 2015. 2. 24. 피청구인으로부터 2015. 3. 1.자로 [REDACTED]
[REDACTED]고로 전보 처분을 받았다.
- 2) 2015. 2. 23. 피청구인 이사회가 개최되어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등이 의결되었고, 교원인사위원회가 2015. 2. 26. 개최되었다.
- 3) 청구인은 2015. 2. 26. 피청구인에게 전보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2015. 3. 6. 재차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회신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15. 3.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2015. 2. 24.자 전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절차상 하자 유무

청구인은 이 사건 전보를 함에 있어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없었고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행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건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제1항은 각급학교의 교원(학교의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임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임면이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2891 판결), 이 사건 전보처분은 피청구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동국대부속여중에서 같은 학교법인 산하 동국대부속영석고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임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위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규정한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 정관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3항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정관 제58조(운영세칙)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동국대부속여중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기능)는 위 정관 제5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를 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학교교원 신규임용 및 전보에 관한 규정 제4장 전보 내 제16조(중·고등학교간 전보)는 본인이 원하거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사를 중학교에,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에 전보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정관은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법인 내 학교 간 전보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국대부속여중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에서도 위 정관과 동일하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학교교원 신규임용 및 전보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내용은 본인이 원하거나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내 중·고등학교간 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관 제58조(운영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볼 수 없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다. 이 사건 전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전보처분 당시 [REDACTED]여중의 국어교사 수를 감축한 것도 아니었음에도 27년간 중학교 국어를 담당했던 청구인을 갑자기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전보처분을 위한 비교·교량 및 신의칙상의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1) 교원에 대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참조).

2)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법인 영석학원 산하 영석고 등학교는 2011. 9월 피청구인 법인에 합병되어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

고등학교로 변경되었고,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3학급이 증설되어 2016학년도에 학급수가 증설될 예정인 반면 동국대부속여중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학급수가 감축될 예정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청구인이 전보발령 받은 동국대부속영석고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하여 왕복 최소 4시간의 출·퇴근 시간이 소요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지(이태원동)에서 동국대부속영석고까지의 거리는 35km정도로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청구인은 동국대부속여중 출퇴근시 자가용을 이용하였음) 왕복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전보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청구인이 감당 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전보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2015. 3. 1.자 전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립중학교 학급감축 계획, 2014. 9, 서울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명	학 급 수				
	2014	2015	2016	2017	2018
동국대부속여중	27	23	21	20	19



2015. 6. 24.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성삼제 성삼제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 원 고영현 고영현

위 원 양일선 양일선

위 원 김동춘 김동춘

위 원 김경배 김경배

위 원 문영기(불참)

위 원 박범덕 박범덕



위 정본임.

2015. 7.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